

비관세 장벽 모니터링 보고(일본 도쿄지사)

I | 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 및 동향[2020.11월]

1. 종묘법[種苗法] 개정

가. 개정 배경

- 최근, 우리나라(일본)의 우량 품종이 해외로 유출되고 타국에서 증산되어 제3국에 수출되는 등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출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농림수산업 발전에 지장이 발생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
- 또한, 육성자권 침해의 입증에는 품종등록시의 종묘와의 비교 재배가 필요하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육성자권의 활용이 쉽지 않은 점이 현재화(표면화)되고 있음
- 이에, 등록품종을 육성자권자(育成者權者)의 의사에 따라 해외유출의 방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육성자권을 활용하기 쉬운 권리로 하기 위해 품종등록제도의 재검토(개정)를 도모함

나. 개정 법률안의 개요

1) 육성자권자의 의사에 따라 해외 유출방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

(1) 육성자권이 미치지 않는 범위의 특례의 창설(신설)

- ① 등록품종의 종묘 등이 양도된 후에도, 해당 종묘 등을 육성자가 의도하지 않은 국가에 수출하는 행위 및 의도하지 않은 지역에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육성자권이 미칠 수 있도록 특례를 만듦(제21조의2~제21조의4)

* 이에 따라, 해외로 반출되는 것을 알면서 종묘 등을 양도한 자도 형사벌 및 손해배상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(육성자권의 침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)

- ② 수출·재배지역과 관련된 제한의 내용은 농림수산성HP에 공표하고, 등록품종에 있다는 취지 및 제한이 있다는 취지의 표시도 의무화함(10만엔 이하의 과태료). (제21조의2제3항·제5항·제6항, 제57조의2, 제75조)

(2) 자가 증식의 재검토

- 육성자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예외 규정에 있는 농업자가 등록 품종의 수확물의 일부를 차기 수확물의 생산을 위해 해당 등록품종의 종묘로서 이용하는 자가증식은 육성자권자의 허락에 근거하여 행하는 것으로 함(구법 제21조 제2항·제3항)

(3) 질 높은 품종등록 심사를 실시하기 위한 조치

- 심사내용의 충실을 위해 출원자로부터 심사의 실비상당액을 징수함과 동시에 출원료 및 등록금 수준을 낮춤(제6조, 제15조의3, 제45조)

2) 육성자권을 활용하기 쉽게 하기 위한 조치

- ① 품종등록부에 기재된 특성(특성표)과 피의 침해 품종의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양자의 특성이 동일한 것임을 추정하는 제도를 마련해 침해 입증을 행하기 쉽게 함(제35조의2)
- ② 육성자가 특성표의 보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, 재판에서의 증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육성자권이 미치는 품종인지 아닌지를 농림수산 대신이 판정하는 제도를 마련함(제17조의2, 제35조의3)

3) 기타

- ① 특허법 등에 따라 I 직무육성 품종 규정의 충실(제8조), ii 외국인의 권리향유 규정의 명확화(제10조 제4호), iii 재외자의 대리인 필치(必置)화(제10조의2), iv 통상이용권의 대항제도(제32조의2), v 재판관이 증거서류 제출 명령을 내릴 때의 증거서류 열람 수속의 확충(제37조)의 조치를 강구함
- ② 지정종묘제도에 대하여, 지정 종묘의 판매 시 표시의 방향(모습, 모양)을 명확히 하는 조치를 강구함(제59조제1항제2호)

다. 시행기일: 2021년 4월 1일

- 단, 1)(2)에 대해서는, 2022년 4월 1일, 1)(1) 및 3)①iii, v 및 3) ②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1일, 3)①ii에 대해서는 공포일

□ 시사점

- 일본이 국내산 품종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종묘법을 개정함. 육성자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육성자권이 미치지 않는 범위의 특례를 창설,

자가 증식의 재검토 등이 그 주요 내용으로 일본의 개정 법률을 숙지하여 관련법률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함

II

통관문제사례 관련(대응방안, 사유분석, 경쟁국산 등)

1. 일본국 수입식품 위반사례 주요내용

○ 위반사례 발생 주요 특징

-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 발표자료에 의하면 2020. 11월의 대일수입식품류 위반건수는 50건이 발생함(식기류 제외)
- 한국산 식품위반사례는 이매패류의 무가열섭취 냉동식품에서 세균수 초과 및 대장균군 양성위반 각 1건씩 모두 2건의 위반사례가 발생함
- 각국에서 수입된 전체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잔류농약 위반사례가 11건(21.6%), 냉동식품 등의 세균수 초과 및 대장균군 검출등으로 인한 위생위반이 17건(33.3%), 첨가물 위반이 10건(19.6%), 피넛제품, 옥수수, 초콜릿 제품 등에서 아플라톡신 검출위반 9건(17.6%) 등으로 나타남

2. 주요 경쟁국별 위반 사례

○ 베트남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

- 11월 베트남산 수입식품의 위반건수는 12건으로 세계 각 수입국가중 위반건수가 제일 높았으며, 각국에서 수입되는 전체 수입식품의 위반율중 23.5%를 차지함. 잔류농약이 2건, 아플라톡신 2건, 세균수 초과 등 위생위반 4건, 첨가물 사용 부적합 4건이 발생함
- 잔류농약 위반사례는 냉동 홍고추에서 발생함
- 첨가물 사용 기준 부적합은 농산가공품(쌀스트로우), 비혼 등에서 발생함

○ 중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

- 11월의 중국산 수입식품의 위반건수는 11건으로 세계 각 수입국가중 위반건수가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위반건수가 높았으며. 잔류농약

- 이 6건, 아플라톡신이 1건, 세균수 초과 등 위생위반 4건이 발생함
- 잔류농약 위반사례는 냉동양파, 신선양파 및 당근 등에서 발생됨
- 미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
 - 미국산은 옥수수 제품에서 아플라톡신 검출 3건, 건강식품에서 첨가물 기준치 위반이 2건, 총 5건이 발생함
- 태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
 - 멍쌀 정미에서 곰팡이 발생 위반 2건, 레토르트 살균식품 야채 조제품에서 발육가능한 미생물 양성 위반 1건, 과자류에서 첨가물 위반 1건, 울무에서 아플라톡신 1건등이 발생함
- 대만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
 - 고춧가루, 조미료 등에서 조리기준부적합(방사선조사) 위반 4건, 냉동 고구마 제품에서 세균수 초과 등이 검출된 위반이 5건이 발생함
- 한국산 수입식품 위반사례
 - 한국산의 경우 무가열냉동식품 이매패류에서 세균수 초과 1건 및 대장균군 양성 위반 사례가 각 1건씩 총 2건이 발생하였음
 - 한국산식품의 위반건수는 11월말 현재, 27건으로 전년누적동기대비 245%(13건) 증가함. 대일수출 안전성 관리에 주의가 필요시 되고 있음
- 기타국가 위반사례
 - 뉴질랜드의 꿀가공품, 멕시코의 신선딸기, 아르헨티나의 강낭콩에서 잔류농약 검출이 각각 1건씩 발생함
 - 인도의 레토르트 살균식품에서 지정외 첨가물인 TBHQ가, 독일의 초콜릿류에서 지정외 첨가물이 각각 1건씩 검출됨
 - 스페인의 초콜릿제품 및 인도네시아의 피넛제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검출되는 위반이 각각 1건씩 발생함
 - 폴란드의 무가열섭취냉동 연어, 인도의 가열섭취 냉동새우, 나이지리아의 분말청량음료에서 세균수 초과가 각각 1건씩 발생함

<표1> 대일 수출 국가별 식품 위반건수



※ 표 왼쪽 숫자는 위반건수임

<표2> 국가별 식품 위반 내역 상세

국가명	위반건수	위반율	잔류농약 및 항균제등	아플라톡 신	위생	첨가물	기타
베트남	12	24.0	2	2	4	4	
중국	11	22.0	6	1	4		
미국	5	10.0		3		2	
태국	5	10.0		1	3	1	
대만	5	10.0			1		4
한국	2	4.0			2		
인도	2	4.0			1	1	
기타국가	8	16.0	3	2	2	1	
합 계	50	100.0	11	9	17	9	4
비율(%)			22.0	18.0	34.0	18.0	8.0

III

FTA 이행 이슈 관련

(해당 없음)